

하 동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49호 2012. 10. 30 (화요일)

고 시

- 하동군 고시 제2012- 49 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(27차) 2

공 고

- 하동군 공고 제2012- 922 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4
- 하동군 공고 제2012- 927 호 보상계획 공고 5
- 하동군 공고 제2012- 930 호 1993.1.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공고 9
- 하동군 공고 제2012- 931 호 2012년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10
- 하동군 공고 제2012- 932 호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1
- 하동군 공고 제2012- 935 호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4
- 하동군 공고 제2012- 940 호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3

회 람	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하 동 군 공 보

(2) 제 349 호

하동군 고시 제2012 - 49호

도로명주소 개별고시(27차)

도로명주소법 제1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10. 30.

하동군수

○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1267-35 외 6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별 지 참 조(7건)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(☎880-208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1.7.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하 동 군 공 보

(3) 제 349 호

도로명주소 고시조서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비 고
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123	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모암길 29-15	2007-06-18	모암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	
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291	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 96	2007-06-18	신대리 윗쪽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	
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353	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숙채1길 174-65	2009-03-02	마을명에 일련번호 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	
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320-1	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평들담길 20-26	2009-03-02	성평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에 들담이라는 마 을지역특성을 반영	
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산76-3	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사등길 37-20	2009-03-02	양포의 서북쪽 골짜기 가 옛적 큰 홍수를 당 하여 모래가 밀려와 쌓 여 이축된 지형에 조성 되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	
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산24-1	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수척길 30	2008-04-02	수찰이라는 물의 양을 알아볼수 있다는 순수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 하여 수척이라 불리는 자연마을이름 반영	
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978	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267-35	2009-03-02	횡천-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나가 청학동 으로 가는 도로	

하 동 군 공 보

(4) 제 349 호

공고 제2012 - 922호

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

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획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.

2012. 10. 24.

하 동 군 수

□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

- 포획 목적 : 유해야생동물 구제
- 허가 내역

허가지역	허가자 (포획자)	포획방법	포획기간	포획동물 및 수량
하동군 양보면 통정리 일원	박형배	총렵 (자력)	'12. 10. 24 ~ '12. 12. 24일	허가기간 내 멧돼지, 고라니 각 10마리 이내
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일원	정봉호	총렵 (자력)	'12. 10. 24 ~ '12. 11. 7일	허가기간 내 멧돼지, 고라니 각 10마리 이내

○ 포획제외지역

-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54조(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) 및 동법 제55조(수렵의 제한),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(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)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
- 군수가 정한 “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준수사항”에 해당하는 장소

하동군 공고 제 2012 -927호

보상계획 공고

2012. 10. 29.

하 동 군 수

【신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】의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『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, 사업지구내 편입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 개요

- 사 업 명 : 신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
- 사업위치 :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33-3외 67필지
- 사 업 량 : 하천정비 L=0.4km, 교량 1개소
- 사업예정기간 : 2012년 12월 ~ 2013년 12월(착공일로부터 1년)
- 사업시행자 : 경상남도지사(재난방재과)

2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: 별첨

3. 보상시기 : 2012년 12월경 개별 통지

4. 보상방법 및 절차

-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며,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
- 보상계획공고->측량 및 감정평가실시->보상금 개별통보->보상협의

5. 열람방법

-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하동군청(재난관리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

6. 열람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(공휴일 제외)

7. 의견제출장소 : 하동군청 재난관리과(☎055-880-2253)

하 동 군 공 보

(6) 제 349 호

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							
◎ 소재지 :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							
번호	지 번	지목	대장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 유 자		비고
					성 명	주 소	
1	533-3	답	1,735	41	강성란	부산 사상구 주례로10번길	
2	533-13	답	985	505	경상남도		
3	533-12	답	279	279	경상남도		
4	533-2	답	784	31	최상복	624-1	
5	533-1	답	1,150	490	고상수	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73	
6	533-11	답	328	328	경상남도		
7	1415-4	답	2,850	204	농림수산식품부		
8	553-5	답	55	55	하동군		
9	533-10	답	3	3	하동군		
10	533-6	답	46	46	남기호	287	
11	1414	구	186	160	농림수산식품부		
12	553-7	답	63	63	하동군		
13	553-3	답	823	410	남기호	287	
14	553-4	답	976	976	남기호	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53-2	
15	552-5	답	1,937	785	윤또영	옥정리 532	
16	552-6	답	591	591	하동군		
17	1447	구	2,025	93	농림수산식품부		
18	551-5	답	1,662	222	황순경	경남 김해시 지내동360 지내2차양지마을동원 아파트 204-701	
19	551-11	답	338	338	하동군		
20	551-10	답	124	124	하동군		
21	551-23	답	427	57	정미혜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194번길 18-1 (수진동)	
22	551-9	답	47	47	하동군		
23	551-21	답	36	36	국토해양부		
24	551-20	답	694	62	국토해양부		
25	551-26	답	25	25	하동군		
26	551-19	답	624	186	국토해양부		
27	551-8	답	105	105	하동군		
28	551-25	답	6	6	국토해양부		

하 동 군 공 보

(7) 제 349 호

번호	지 번	지목	대장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 유 자		비고
					성 명	주 소	
29	551-18	답	1	1	국토해양부		
30	551-2	답	2,041	7	손옥태	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23-609	
31	551-1	답	2,077	107	박재희	631-10	
32	566	답	2,054	174	경상남도		
33	1501	구	354	67	국토해양부		
34	597-6	답	853	23	재단법인	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71-3	
35	1502	도	182	21	국토해양부		
36	600	답	367	367	경상남도		
37	1500-5	도	188	188	국토해양부		
38	597-11	대	123	123	배미혜	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1122 에시스임대 아파트101-1312	
39	597-5	답	42	42	이승현	방화리 66	
40	627	전	83	83	박현숙	악양면 봉대리 430	
41	597-20	잡	27	27	이호남	사천시 향촌동 943-16	
42	628-4	도	158	54	하동군		
43	628-6	잡	142	142	하동군		
44	626	답	208	208	경상남도		
45	628-2	잡	232	232	강성란	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147-2	
46	628-1	답	522	163	유준삼	135	
47	629	답	341	147	유원종	인천 부평구 산곡동 82-36 동원아파트2-1007	
48	629-1	답	3	3	하동군		
49	635-2	대	241	42	배이준	635	
50	635-3	답	117	117	하동군		
51	635-1	대	570	128	정정숙	531-1	
52	635-4	답	705	145	정정숙	597-4	
53	556-13	잡	500	79	하동군		
54	1450	구	1,508	416	농림수산식품부		
55	556-10	답	618	58	허두영	옥정리 359-1	
56	556-11	답	1,819	219	허두영	옥정리 359-1	
57	556-14	답	475	475	하동군		
58	556-12	답	2,008	355	김승규	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212 장성마을101-402	
59	554-4	답	983	983	하동군		

하 동 군 공 보

(8) 제 349 호

번호	지 번	지목	대장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 유 자		비고
					성 명	주 소	
60	554-1	답	1,452	396	김범규	진주시 주약동 407-1 금호석류마을111-701	
61	1020	천	83,920	8,240	국토해양부		
62	554-2	답	765	17	박점생	진주시 신안동 444-5	
63	554-5	답	363	363	하동군		
64	554-3	답	1,466	17	김윤용	옥정리 600	
65	554-6	답	237	237	하동군		
66	554-11	답	11	11	하동군		
67	554-7	천	1,406	10	하동군		
68	554-12	답	433	145	하동군		
합 계			128,499	20,900			

하동군공고 제2012-930호

1993. 1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공고
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199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가 격 기 준 일 : 1993. 1. 1.
2. 정정지가 결정·공시일 : 2012. 10. 26.
3. 정정지가 결정·공시 필지수 : 1필지

순 번	토 지 소 재	지 목	결정지가	정정지가	비 고
1	하동 읍내리 836	대지	3,660	36,600	기재오류에 대한 직권정정

4. 행정사항

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기타사항

하동군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기타사항은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(☎055-880-2122~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2 년 10 월 26 일

하 동 군 수

하 동 군 공 보

(10) 제 349 호

하동군공고 제2012-931호

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
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·공시하오니,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1. 가 격 기 준 일 : 2012. 07. 01
2. 결 정 · 공 시 일 : 2012. 10. 31
3. 결 정 · 공 시 필 지 수 : 2,098필지

읍·면	결정필지수	읍·면	결정필지수
합 계	2,098필	금남면	158필
하동읍	295필	진교면	138필
화개면	145필	양보면	73필
악양면	271필	북천면	82필
적량면	70필	청암면	57필
횡천면	325필	옥종면	141필
고전면	198필	금성면	145필

4. 결 정 · 공 시 내 용 : 토지지면별 m²당 가격
(토지지면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군청 민원과 및 읍·면 사무소에 비치)

5. 이의신청 및 처리

○ 이의신청

- 신청기간 : 2012. 10. 31 ~ 11. 29(30일간)
- 신청자 :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
- 신청방법 : 이의신청 서식에 의거 신청(군, 읍·면사무소 민원실 비치)
- 신청장소 : 하동군청 민원과, 토지소재지 읍·면민원실

○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

-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며,
-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6. 기타사항

하동군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기타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(055-880-2122~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2 년 10 월 31 일

하 동 군 수

하동군 공고 제 932 호

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

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10월 30일

하 동 군 수

1. 자치 법규명 : 하동군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
2. 폐지 이유
 - 관광진흥법 제46조의 2(지역관광진흥협의체) 신설 예정이었으나 국회 법률 검토과정에서 폐기, 모법(母法) 부재로 인한 국도비 지원근거 전무
 - 협의회 구성 후 활동이 되지 않고 기능상 뚜렷한 역할 부여가 불분명하여 유명무실화 우려
 - 제도적·행정적인 필요성과 활동성이 미약함으로 폐지코자 함.
3. 주요 골자 :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.
4. 의견 제출 :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2년11월15일까지 하동군(참조 : 문화관광과, 전화 880-2375, FAX 880-2369, cool95@korea.kr)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 - 나. 성 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하 동 군 공 보

(12) 제 349 호

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“안”

의 번	안 호	제	호
--------	--------	---	---

제출연월일 : 2012. 10.

제 출 자 : 하동군수

1. 폐지이유

- 관광진흥법 제46조의 2(지역관광진흥협의체) 신설 예정이었으나 국회 법률 검토과정에서 폐기, 모법(母法) 부재로 인한 국도비 지원근거 전무
- 협의회 구성 후 활동이 되지 않고 기능상 뚜렷한 역할 부여가 불분명하여 유명무실화 우려
- 국도비 예산지원 없이 군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기에는 군비 부담 과중
- 제도적·행정적인 필요성과 활동성이 미약함으로 폐지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감사실

하동군 조례 제 호

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“안”

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하 동 군 공 보

(14) 제 349호

하동군 공고 제 935호

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10월 30일

하 동 군 수

1. 자치 법규명 :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제안 이유
 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행안부 예규 제415호, 2012. 7.11 개정)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
 -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 일부를 삭제하고, 지역조합 등(제2금융권)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3. 주요 골자
 - 가. 금고지정 방법 개선(안 제3조제1항)
 - 나. 지역조합 등(제2금융권) 평가기준 마련(안 제6조 별표)
 - 다.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
(안 제6조의 별표 및 안 제7조의 별지 제1호서식, 제2호서식)
 - 라.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 개선(안 제6조 별표)
4. 의견 제출 :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하동군(참조 : 재무과, 전화 880-2292, FAX 880-2279, e-mail:smile9066@korea.kr)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 - 나. 성 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. 10. .
제 출 자 : 하 동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행안부 예규 제415호, 2012. 7.11 개정)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
-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 일부를 삭제하고, 지역조합 등(제2금융권)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금고지정 방법 개선(안 제3조제1항)

-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상남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금고지정 방법의 경쟁원칙 강화

나. 지역조합 등(제2금융권) 평가기준 마련(안 제6조 별표)

- 일정 요건을 갖춘 제2금융권도 특별회계(기금)에 한해 금고 지정 가능

다.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

(안 제6조의 별표 및 안 제7조의 별지 제1호서식, 제2호서식)

- <별표> 및 <별지서식>의 세부항목 및 배점 일부 배정

라.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 개선(안 제6조 별표)

- ‘관내지점의 수’에서 금고 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
- 신규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현행

하 동 군 공 보

(16) 제 349 호

‘실적 및 계획’ 평가항목을 같은 배점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
-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(행안부 예규 제415호, 2012. 7.11. 개정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

- 1) 예고기간 : 2012. 10. 30. ~ 2012. 11. 19 . (일간)
- 2) 예고방법 : 시군구보, 홈페이지, 게시판, 신문광고 등
- 3) 제출의견 : 건 (또는 없음)
- 4) 반영여부 : 반영 건, 미반영 건

마. 규제심사 : 규제신설 · 강화 · 폐지 · 해당사항 없음 (중 택 1)

※ 추후 ① 입법예고 시 : “3. 참고사항” 중 “다.”까지 기재

②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의뢰 시 : “가. ~ 마.”까지 기재

하동군 규칙 제 호

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3호 내지 제4호”를 삭제한다.

제6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7조 중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에 관하여는 약정기한까지 종전 규정을 따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

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	금융기관별 점수		비 고
계		100			
1.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	35 (10)			
	- 국외 평가기관	(6)			
	- 국내 평가기관	(4)		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(25)			
	- BIS 자기자본비율(안정성)	(9)			
	- 고정이하 여신비율 (건전성)	(7)			
	- 자기자본 이익율 (수익성)	(6)			
	- 대손충당금적립율 (안정성)	(3)			
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	15			
	가. 정기에금 예치금리	(6)			
	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	(5)			
	다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	(4)			
3. 주민이용 편의성		20			
	가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	(5)			
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(8)			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(7)			
4. 금고업무 관리 능력		20			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(5)		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(7)			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	(5)			
	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(3)			
5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능력		10			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	(5)			
	나. 군과의 협력사업	(5)			

200 . . .

심사자 :

위원 (인)

하동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

하 동 군 공 보

(20) 제 349 호

[별 지 제 2 호 서 식]

하 동 군 금 고 지 정 심 의 결 과 집 계 표

금융기관명 :

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	득 점 합 계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
계		100							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상태 평가	(10)								
	- 국외 평가기관	(6)								
	- 국내 평가기관	(4)							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(25)								
	- BIS 자기자본비율	(9)								
	- 고정이하 여신비율	(7)								
	- 자기자본 이익율	(6)								
- 대손충당금 적립율	(3)									
2. 자치단체 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(6)								
	나. 공공예금 적용금리	(5)								
	다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	(4)								
3. 주민이용 편의성	가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현리장	(5)								
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(8)								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(7)							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(5)							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(7)								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 리 능력	(5)								
	라.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	(3)								
5.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능력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	(5)								
	나. 군과의 협력사업	(5)								

200 . . .

하 동 군 금 고 지 정 심 의 위 원 회 위 원 장

(인)

하 동 군 수 귀 하

하 동 군 공 보

(21) 제 349 호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2조 (생 략)</p> <p>제3조(금고 지정방법 등) ① (생 략)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<u>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상남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군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</u></p> <p>4. <u>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. 다만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</u></p> <p>5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5조 ~ 제13조 (생 략)</p>	<p>제1조 ~ 제2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금고 지정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삭 제></p> <p>4. <삭 제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 ~ 제13조 (현행과 같음)</p>

하 동 군 공 보

(22) 제 349 호

[별표 1] 하동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(제6조 관련)	[별표 1] 하동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(제6조 관련)
평 가 항 목	평 가 항 목
배점기준 (총계 100점)	배점기준 (총계 100점)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1. -----
35	35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	가. -----
(10)	(10)
- 국외 평가기관(6점)	-----
- 국내 평가기관(4점)	-----
4	4
<u><신 설></u>	<u>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10점) 평가</u>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나. -----
(25)	(25)
- <u>BIS 자기자본비율(안정성, 9점)</u>	- <u>BIS 자기자본비율(안정성, 9점)</u>
9	9
<u><신 설></u>	<u>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9점)</u>
- <u>무수익 여신비율(건전성, 7점)</u>	- <u>고정이하 여신비율(건전성, 7점)</u>
7	7
- <u>자기자본 이익율(수익성, 6점)</u>	- <u>자기자본 이익률(수익성, 6점)</u>
6	6
<u><신 설></u>	<u>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(신협, 농수·산림조합, 새마을 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.</u>
<u><신 설></u>	<u>※ 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 등 감독 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</u>
- (생략)	- (현행과 같음)
3	3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18	15
가. ~ 다.(생략)	가. ~ 다.(현행과 같음)
라. <u>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</u>	<u><삭 제></u>
3. 주민이용 편의성	3. -----
19	20
가. <u>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</u>	가. <u>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</u>
(5)	(5)
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<u>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 되는 지점은 제외</u>
(9)	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다. (현행과 같음)
(5)	(8)
(5)	(7)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4. -----
18	20
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가. (현행과 같음)
(5)	(5)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나. (현행과 같음)
(5)	(7)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	다. (현행과 같음)
(5)	(5)
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라. (현행과 같음)
(3)	(3)
5. <u>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</u>	5. <u>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</u>
10	10
가. <u>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및 계획</u>	가. <u>지역사회에 대한 기여</u>
(5)	(5)
나. <u>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</u>	나. <u>군과의 협력사업</u>
(5)	(5)
	<u>※ 실적 및 계획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,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</u>

하동군 공고 제2012-940호

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10월 31일

하 동 군 수

1. 자치 법규명 :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
2. 제안 이유 :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하동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·전시·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
3. 주요 골자 :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·전시·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을 적용(제31조 제3항 신설)
4. 의견 제출 :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하동군(참조 : 재무과, 전화 880-2305, FAX 880-2279, e-mail jini914@korea.kr)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 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하 동 군 공 보

(24) 제 349 호

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제	호
----------	---	---

제출연월일 : 2012. 10.
제 출 자 : 하동군수

1. 개정이유

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하동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·전시·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2. 주요내용

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의 공동 생산·전시·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을 적용
(제31조 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조례 :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다른 시·군 입법선례 : 해당없음
- 라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동법시행령

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 제3항을 신설한다.

제31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

③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5항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·전시·판매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